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동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1
----------	-------

발의년월일 : 2012. 5. .

발 의 자 : 유동균, 김효철, 마동환,
송병길,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8명)

1. 제정이유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사항 마련 등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위원회 참석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제21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기 타

1) 입법예고 : 필요

2) 예산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 필요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 ② (생 략) <신 설></p>	<p>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구청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